산업보건 주요뉴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

–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감독 컨트롤타워, 신청사 이전 및 업무 개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월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국(局) 단위의 조직이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본부는 종전 5개과 47명에 불과하던 조직이 '산재예방지원과'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5개과가 신설되고 인력은 82명으로 증원되었다. 전국 지방노동관서는 산재예방지도과 등 46개과 715명에서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 과가 증설되고 전체 정원은 821명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재정투자, 교육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의식과 관행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늘어난 조직과 인력으로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사업장에 대한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수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도 대비한다.

《기구 · 정원》 1본부 2정책관 9과 1팀, 82명 ※(보강내역) +1본부 +1관 +4과 +1팀, +35명

[신설]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신설]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신설]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보상정책과	[신설] 산재예방지원과
산업안전기준과	[신설]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산업보건기준과	[신설]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신설] 직업건강증진팀	화학사고예방과

[신설] 신설안전보건감독기획과	•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 감독자문위원회 운영 • 사회적이슈 관련 기획 감독, 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 등
[신설] 산재예방지원과	•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안전문화 교육 · 확산 •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위험성평가제 활성화 등
[신설]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건설현장 안전보건감독 및 건설업 본사 안전 네트워크 운영 • 건설현장 기술지도 및 지원 및 건설재해전문지도기관 관리 등
[신설]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 • 「중대재해처벌법령」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 지원 및 총괄
[신설] 직업건강증진팀	• 근로자 건강증진정책 수립, 보건분야 사업장 기술지도 •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정신건강장해 예방 등

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신설)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위반 사건 수사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관리과(7개과, 4개과 증설)는 현장의 특별감독 및 광역감독 총괄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간사위원 등 국회의원과 노사대표(한국노총 정윤모 부위원장, 경총 이동근 부회장), 재해예방전문기관(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 등), 관련단체(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석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축하하였다.

*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 개최"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하였다.

법 제정('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 · 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마철 폭우로 인한 수몰사고 위험 경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6월 28일 전주시 평화동에서 상수도 배관 기능개선 공사 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가 발생했다며 장마철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건설현장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년 7월 31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공사(사망 3명), '17년 7월 4일 창원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사망 3명, 부상 1명) 등 이전에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몰사고 예방대책'이 담긴 예방자료를 긴급 배포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간 맨홀 내부 공사를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상하수도 또는 우수관로 등에서 발생하는 수몰사고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

*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고용노동부, 장마철 폭우로 인한 수몰사고 위험 경고"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끼임 사망사고 발생 ○○시멘트㈜ 강력조치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월 10일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멘트(주) ○○공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시멘트 사업장에 동종 · 유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끼임 사고는 제조업의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수리 · 정비 · 청소 등 비정형작업에서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 ·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고도 비정형작업 중 발생한 전형적인 끼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1년 7월 10일 14:53, 시멘트 포대 적재기가 가동을 멈추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하부에서 정비 중 설비가 가동되어 머리가 끼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비정형작업 중 끼임은 설비의 운전을 멈추는 기본적인 조치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사고로 ○○시멘트(주) ○○공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이 끼임 사고 위험방지를 위한 지도 · 조언을 하였는지,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작업중지 명령하고,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고 조사와 함께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원적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할 계획이다.

*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끼임 사망사고 발생 ○○시멘트㈜ 강력조치 예정"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